

순천시의회 공고 제2017 - 95호

「순천시 도시계획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7년 10월 11일

순 천 시 의 회 의



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사항 반영 및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안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 명확화
-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용지 환산계수 신설
 - 주거지역 0.3, 상업지역 0.1, 공업지역 0.2, 녹지지역 0.4, 비도시지역 0.4
- 상업지역내 공동주택 입지제한 반영
 - 현행 : 공동주택 설치 가능
 - 개정 : 주상복합 공동주택에 한하여 설치 가능 (주거 90% 미만)
- 미세분된 관리지역안에서 건축제한 규정 폐지
 - 미세분 관리지역내 행위제한 규정 폐지
-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 휴게음식점 설치기준 폐지
 -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설치기준 적용
-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 구성요건 개정

- 현행 : 도시계획관련 업무 담당 국장
- 개정 :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 공무원
- 도시계획위원의 제척 규정 신설
- 도시계획위원회 안전 처리기한 신설 (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)
-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 기능, 구성에 관한 조항 정비
 - 현행 : 위원회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 보좌
 - 개정 :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획 및 조사 연구
-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에서 생태계보전가치 1, 2등급지 제외

3. 입법예고 기간 : 2017. 10. 12. ~ 2017. 10. 16. (5일간)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pjw1028@korea.kr
- 2) 주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
- 3) 팩스 : 061-749-4773

-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(전화 : 061-749-495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3호 중 “차목·타목 및 과목”을 “거목, 더목 및 러목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26조를 삭제한다.

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

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)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거지역 : 0.3
2. 상업지역 : 0.1
3. 공업지역 : 0.2
4. 녹지지역 : 0.4
5. 도시지역 외의 지역 : 0.4

제63조제1항 중 “이내”를 “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

제6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4조의2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안건의 심의·자문에서 제척된다.

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·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·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·자문을 회피하여야 하며,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·기피·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·자문에 참여한 경우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6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위원회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(제출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)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성원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(이하 “기획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72조제2항제1호 중 “광역도시계획·도시기본계획·도시관리계획”을 “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”으로, “사전검토”를 “검토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·지도 및 조사·연구

제72조제2항제3호 중 “도시계획위원회” 를 “위원회” 로, “조사연구” 를 “조사·연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3조(구성) ①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
되,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
제공무원으로 한다.

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제74조(임용 및 복무 등)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·복무 등은 「지방공무원 임
용령」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6조를 삭제한다.

별표 7 중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타. 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[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
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
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
은 제외한다]

별표 8 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[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
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
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
은 제외한다]

별표 9 중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[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 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]

별표 23과 별표 24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28 본문 제4호 중 “제4호” 를 “제3호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14조(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)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·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같은 호 차목·타목 및 과목은 제외한다)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(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20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I 등급(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) 및 II 등급(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)이 아닌 토지</p>	<p>제14조(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거목, 더목 및 러목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			

현행	개정안
<p>② (생략)</p> <p>제26조(개발행위허가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(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)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.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.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<p>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
<p>제29조(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)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9조(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 <p>제6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국장</p> <p>3. 환경 관련 업무 담당 국장</p> <p>4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9조의2(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)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주거지역 : 0.3</p> <p>2. 상업지역 : 0.1</p> <p>3. 공업지역 : 0.2</p> <p>4. 녹지지역 : 0.4</p> <p>5. 도시지역 외의 지역 : 0.4</p> <p>제63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 이하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</p> <p><삭제></p> <p>3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④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 <p>제64조의2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안건의 심의·자문에서 제척된다.</p> <p>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·자문의 공정성을 기대하기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5조(회의운영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제72조(설치 및 기능) ① <u>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(이하 “기획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·도시기본계획·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</u></p>	<p><u>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·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·자문을 회피하여야 하며,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시장은 위원회 제척·기피·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·자문에 참여한 경우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5조(회의운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위원회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(제출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)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성원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72조(설치 및 기능) ① <u>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(이하 “기획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</u></p> <p>② -----.</p> <p>1. -----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----- 검토</p>

현 행	개 정 안
<p>2. <u>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</u></p> <p>3. <u>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</u></p> <p>③ <u>기획단은 기획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,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,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.</u></p> <p>④ <u>단장 및 연구위원은 「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」에 의한 7명 이내에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⑤ <u>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.</u></p> <p>제73조(단장의 임무 등) ① <u>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,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.</u></p> <p>② <u>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,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,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.</u></p> <p>제74조(임용 및 복무 등) ① <u>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·복무 등은 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	<p>2. <u>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·지도 및 조사·연구</u></p> <p>3. <u>위원회----- ----- 조사·연구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제73조(구성) ① <u>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되,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.</u></p> <p>제74조(임용 및 복무 등) <u>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·복무 등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 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76조(과태료의 부과)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「순천시세 부과징수 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[별표 7]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. ~ 카. (생략) <신설></p> <p>[별표 8]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. ~ 마. (생략) <신설></p>	<p><삭제></p> <p>[별표 7]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. ~ 카. (현행과 같음) 다. 건축법 시행령]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[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]</p> <p>[별표 8]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바. 건축법 시행령]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[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]</p>

현행	개정안
<p>[별표 9]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. ~ 아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[별표23]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</p> <p>※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, 휴게 음식점·제과점·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[별표24] 각 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.</p> <p>가. 영 별표 27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</p> <p>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를 제외한다)</p> <p>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</p> <p>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을 제외한다)</p> <p>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</p> <p>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</p> <p>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</p>	<p>[별표 9]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. ~ 아. (생략) 자. 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[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(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로서 공동 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]</p> <p><u><삭제>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판매시설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에 한한다)</u></p> <p>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의 <u>운수시설</u></p> <p>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<u>의료시설 중 종합병원·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</u></p> <p>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<u>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</u></p> <p>카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<u>운동시설(운동장을 제외한다)</u></p> <p>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<u>숙박시설(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)</u></p> <p>파. 별표 18 자목 및 별표 19 카목의 공장</p> <p>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<u>창고시설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을 제외한다)</u></p> <p>거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<u>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</u></p> <p>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<u>자동차관련시설</u></p> <p>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<u>묘지관련시설</u></p> <p>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<u>관광휴게시설</u></p>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[별표 24]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(별표19, 별표23관련)</u></p> <p>1.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</p> <p>가.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<u>댐의 계획홍수위선(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</u></p> <p>나.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<u>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</u></p> <p>다. <u>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(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, 계획홍수위선으로 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을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</u></p> <p>라. <u>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</u></p> <p>마. <u>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을 유하거리가 10킬로미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</u></p> <p>바. <u>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</u></p> <p>사. <u>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·지방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(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)</u></p> <p>아. <u>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(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)</u></p> <p>2. <u>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·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(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)</u></p> <p>주 : 1) “<u>집수구역</u>”이라 함은 빗물이 <u>상수원·하천·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.</u></p> <p>2) “<u>유하거리</u>”라 함은 하천·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.</p> <p>3) “<u>제1지류</u>”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</p>	

현행	개정안
<p><u>[별표 28] 토지분할 허가기준 (제24조 관련)</u></p> <p>1. ~3. (생략)</p> <p>4. (공유물 분할판결)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<u>제4호</u>를 적용한다. 다만 판결문에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 내용을 심사하여 판결한 공유물 분할 판결문은 예외로 한다.</p>	<p><u>[별표 28] 토지분할 허가기준 (제24조 관련)</u></p> <p>1. 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